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161
----------	-------

발의연월일 : 2024. 1. 4.

발 의 자 : 이주환 · 전봉민 · 박대수
정동만 · 지성호 · 김용판
김형동 · 권명호 · 백종현
안병길 · 구자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도관망과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9년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상수도 수도관벽 내 침전물이 함께 공급된 데 따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현행법상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도관 파열 등의 누수사고에 대한 긴급한 복구공사는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관망관리 측면보다는 단수·탁수 등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급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범위에서 누수 관리업무 중 긴급

복구만을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1조의4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제2호 중 “관리”를 “관리.”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고·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는 제외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단서 신설>	2. ----- -----관리. 다만, 사고·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는 제외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